

##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171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직제 개편에 의한 국의 명칭 변경

### 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 직제 규칙 개편에 따른 “보건사회국장, 농림국장, 식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소장”을 “보건환경국장, 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”로 한다.

### □ 근거법령

-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6조, 제8조, 제9조
-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

### □ 첨부

1.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##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3항 중 "보건사회국장, 농림국장, 식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소장"을 "보건환경국장"

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, 보건환경연구원장"으로 한다.